

번호 05-3

제 목	국문	심근경색증의 의료보험 청구자료 상병기호의 정확도에 관한 연구			
	영문	Accuracy of myocardial infarction diagnosis in National Medical Insurance Claim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기순, 박종구, 김춘배, 류소연, 이태용, 이강숙, 이덕희, 이선희, 지선하, 서일, 고광욱, 박기호, 박운재, 채유미, 홍현숙, 서진숙 조선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남의대, 카톨릭의대, 고신의대, 이화의대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한의무기록협회			
	영문	KS Kim, JK Park, CB Kim, SY Ryu, TY Lee, KS Lee, DH Lee, SH Lee, SH Jee, I Suh, KW Koh, KH Park, WJ Park, YM Chae, HS Hong, JS Suh Depts.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Korean Medical Record Association			
분 야	보건관리() 역 학(○) 환 경()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우리 나라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 수립에 앞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상병기호의 정확도와 부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연구대상자는 KMIC 코호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적용대상자 중 1990년과 1992년에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남성 피보험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10%를 단순 무작위 추출한 115,600명) 중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지난 5년동안 전국 130개 의료기관에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265명이다. 이들에 대해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연구회의 공동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의무기록사들이 1999년 4월과 5월 2개월 동안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심근경색증의 진단기준은 WHO Monica Project, ARIC Study 등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심근경색증 상병기호의 정확성에 대한 1, 2차 평가 결과, 심근경색증이 아닌 경우는 부정확 사유를 조사하였다.</p>					

3. 연구 결과

가. 심근경색증 상병기호의 정확도는 197명(74.4%)였고, 13명(4.9%)의 의무기록이 의료기관의 폐쇄, 전산화 미비, 의무기록지 누락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였다. 11명(4.3%)의 의무기록이 증상, 효소측정치, 심전도 등의 자료가 결여되어 자료 불충분으로 분류되었다.

나. 심근경색증 상병기호의 부정확 사유는 '보험급여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77.7%로 가장 많았고, 발생 주무부서는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심사부서가 88.9%로 가장 많았다.

다. 심근경색증 상병기호의 정확도 관련 요인분석 결과, 진단 의사의 특성, 진단 의료기관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없었다.

4. 고 찰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른 질병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병기호의 일치율에 대한 연구들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심근경색증 국가감시체계 운영시에 의료보험 상병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무기록사를 통한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등록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진단명을 확인하고 의료보험 청구자료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